

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등의 안정적 계속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존속기한 연장

- 1)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하남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사업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 등의 계속 추진 필요
- 2) 기금사업 유지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기대됨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5. 19.~2025. 6. 9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해당없음

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 을 “2030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투자유치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투자유치과장 이금자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정책팀장 한광일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유여상 (031-790-5503)

